

공유재산(옥성면 꽃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년 5월 일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옥성면 꽃감생산시설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오지면으로 지정된(행정자치부 지정) 옥성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생산·소득기반시설로서 당초 사업계획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지역 고유자원인 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어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꽃감 생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성면 꽃감생산시설 현황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재산현황

- 부지내역(사유재산)
 - 면 적 : 4,611m²
 - 매입비 : 80백만원
 - 소유자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시설내역(행정재산)
 - 종 류 : 관리동1동(109m²), 작업장1동(300m²), 건조장2동(720m²), 냉동창고1동(86m²), 저온창고1동(86m²), 부대시설 등
 - 시설비 : 1,117백만원
 - 소유자 : 구 미 시

□ 무상사용 허가 내역

○ 재산내역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시설물 : 관리동1동(109m²), 작업장1동(300m²), 건조장2동(720m²), 냉동창고1동(86m²), 저온창고1동(86m²), 부대시설 등

○ 신청자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사용료 : 무상사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17조)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갱신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3. 참고사항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설립등기일 : 2006. 8. 17
- 회원 수 : 106명(회장 장영호)

○ 관련법령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

공유재산(옥성면 콧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구미시 공유재산(옥성면 콧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옥성면 콧감생산시설 현황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시설현황

- 부지면적 : 4,611m²
- 시설종류 : 관리동1동(109m²), 작업장1동(300m²), 건조장2동(720m²), 냉동창고1동(86m²), 저온창고1동(86m²), 부대시설 등

2. 무상 사용허가 내역

○ 재산내역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시설물 : 관리동 1동(109m²), 작업장 1동(300m²), 건조장 2동(720m²), 냉동창고 1동(86m²), 저온창고 1동(86m²), 부대시설 등

○ 신 청 자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허가기간 만료후 갱신가능)

관 계 법 령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사용·수익허가)

-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 (사용료 면제)

-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